

#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 A Study on Yeongnyeon-euisaeng under Japanese Occupation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Yeongnyeon-euisaeng (永年醫生) was a licensed Euisaeng (醫生) without time limit. Yeongnyeon-euisaeng was a member of bridging the gap between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hanuigye (韓醫界).

This study aims at better understanding the Yeongnyeon-euisaeng. In methods, several statistics have been served about Yeongnyeon-euisaeng on the basis of the Official gazette.

The following facts have been found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First, the time limited licenses have been issued mixed with a permanent license. Secondly, Yeongnyeon-euisaeng lived longer than other people. Third, the residence of Yeongnyeon-euisaeng was a very high proportion in South Hamgyong Province. Fourth, Yeongnyeon-euisae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medical doctor (韓醫師) system after the liberation.

In addition, the correlation of multilateral for Yeongnyeon-euisaeng and Confucian doctor were examined. Area of the Confucian doctor decreased since the 17th century. Confucian doctor's region and position decli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But Confucian doctors were also culled as status of Korean medicine and Neo-Confucianism declined.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Yeongnyeon-euisaeng, Confucian doctor, Official gazette, Han jikyeon

## I. 서론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한의학 시술자는 의사에서 의생으로 격하되었으니, 한의학의 지위와 역할은 1912-14년에 공포된 일련의 규칙과 법령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규정된다.<sup>1)</sup> 이 시기 의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정은 1913년 11월 15일 총독부령 제 102호로 공포된 의생규칙

이다.<sup>2)</sup> 신동원은 선행연구에서 의생규칙 등의 규정과 그 시행에 대해 분석을 한 바 있다. 신은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한의학의 점진적인 도태를 목적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한의가 농촌 등에서 핵심적인 의료인의 역할을 하였고, 총독부도 점차 한의에 대한 민간의 기존 관행을 용인하였음을 논증했다.<sup>3)</sup>

일제강점기 의생은 면허기한을 기준으로 永年醫生과 限年醫生으로 나뉜다.<sup>4)</sup> 영년의생은 의생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의생규칙이 시행된 지<sup>5)</sup> 3개월 내에 면허를 신청한 이로서 갱신이 필요 없는 영구적인 면허를 받았다. 한년의

접수 ▶ 2016년 05월 04일 수정 ▶ 2016년 05월 26일 채택 ▶ 2016년 05월 25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 한의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002;30:347. 참조.
- 2) 본고에서 조선총독부 관보 원문은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를 활용했다. 의생규칙은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472-473.에도 원문이 재수록 되어 있다.
- 3)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과학. 2003;12(2):110-128. 또한 신은 한의가 양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음도 지적하였다. 박지현은 한년의생 김광진이 남긴 자료를 분석하여, 의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공인된 의료인으로서 담당지역의 사망 및 상해 진단서 발부, 시체검안, 중독접종 같은 행정업무를 보고 소경의 금액도 지급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박지현. 「유교지식인 해악 김광진의 의생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보. 2016;229:157-185.
- 4) 영년의생과 한년의생이란 용어는 의생규칙에는 나오지 않으나, 한년의생 출신인 정원희의 유고집 『素軒 鄭源熹遺稿集』. 서울:玄凡社. 1988: 25-26. 등에서 사용된다.
- 5) 의생규칙 부칙 1항에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

생은 의생규칙 부칙 2항에 의거하여, 시행 3개월 이후에 면허를 신청한 이로서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면허를 받았다. 영년의생은 대한제국기의 典醫 및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의학 학술 및 교육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한의사 제도 정착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sup>6)</sup>

일제강점기 의생 개인의 인적사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주소와 본적, 생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 의생의 정확한 실태는 상세하게 조사된 바 없다. 김남일이 교육과 학술에서 두각을 드러낸 일부 의생을 중심으로 행한 연구<sup>7)</sup>와 1915년 진선의생대회 즈음에 배포된 『醫門須知』의 내용에 나온 “의생규칙 발표 후 3개월까지 전국 5813인(서울에서만 312인)”라는 수치가 재인용되는 수준에 불과하다.<sup>8)</sup>

본고는 의서 일제강점기 의생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를 위해 먼저 영년의생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거주지별, 시기별로 통계 분석을 하고, 의생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관보란 조선총독부 관보를 지칭한다. 한년의생도 면허 지역과 기간이 있다는 점을 빼면 영년의생과 법적인 지위가 동일하다. 그러나 한년의생은 생년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면허발급과 갱신, 변경에 따른 변동이 많아서 통계 조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영년의생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에 나온 의서와 의학 학과 인물들 분석을 통해 영년의생의 출신 내력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교량 역할을 한 한의계 구성원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정원희에 따르면 한년의생은 영년의생의 후학들이 형성했다.<sup>9)</sup>

## II. 본론

### 1. 영년의생에 대한 통계적 분석

#### 1) 영년의생의 면허반납

#### (1) 일제강점기 영년의생의 연도별 추이

##### ① 영년의생 총원

의생은 관보에 경기도 경성부부터 시작하여 지역별로 면허 발급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1915년 9월 16일 발급된 5968번 이후로는 6000-6045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면허 기한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첫 발급 시 면허기한이 따로 기록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한년의생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논자가 5967번 이전의 의생 중에서 조사한 한년면허자는 80명이다. 2416, 2653, 3519, 5519, 5630, 5634, 5638, 5879, 5889-5891, 5893, 5894, 5901-5967번이 이에 해당한다. 또 6000-6045번의 경우도 한년면허로 입증되었다.

이들은 면허반납 시에 사유가 期限滿了이거나, 繼續免許를 발급 받았음이 관보에서 확인되므로 限年醫生임을 알 수 있다. 기한만료나 면허 갱신 기록이 없지만, 전후 번호에서 같은 지역의 의생이 한년의생인 경우도 한년의생으로 추정된다. 기록이 없는 까닭은 총독부 관보의 누락으로 보인다. 논자는 총독부 관보 조사 중에 기록의 탈락, 오기 등의 오류 사례를 상당수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년과 한년의생의 번호가 혼재되어 발급되었을까? 이는 면허 신청일과 발급일 사이의 간격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같은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면허 신청과 발급일 사이 간격의 예는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면허발급 이전에 사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4654번 金錫奎는 면허발급일이 8월 4일인데 4월 2일 이미 사망하였으며, 1859번 石昌甫는 면허발급일이 4월 21일인데 3월 10일 이미 사망하였다. 또 영년의생의 경우, 의생규칙에 의하면 법령 시행일(1914년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했음이 명확한데, 그 발급은 해를 넘겨 1915년에도 계속 되고 있다.

6)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한의사로 개칭한다고 하였다.

7)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과주:들녘. 2011:24-490. 일제강점기 의서 연구들에 있어서 저자가 의생인 경우 그 행적에 대해 일부 다루었지만 김남일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 예를 들어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op. cit. p. 474.

9) 정원희. op. cit. p. 25-26.



표 2. 1931-1944년 연도별 영년의생 반납

연도	사망	취소	폐업	기타
1931	104	0	21	0
1932	114	3	24	0
1933	115	0	12	0
1934	116	1	18	0
1935	125	2	14	0
1936	115	5	17	0
1937	83	0	21	0
1938	122	0	15	0
1939	124	1	11	0
1940	86	0	8	0
1941	84	0	15	0
1942	97	0	7	0
1943	73	0	10	0
1944	32	1	5	1

1914년에서 1943년 6월까지 면허반납 사례 중에서 사망은 3179명, 폐업은 757명, 취소는 107명, 기타는 3명으로 총 4043명이다. 면허반납 기록이 없다고 해방 이후까지 모두가 생존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가 단순히 관보에서 누락되거나 면허반납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211번 桂澤宣의 경우 관보에는 면허반납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1917년 만주 봉천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시무 중에 사망했다.

1914년의 경우 4월까지 면허를 신청 받았고, 1944년은 7월 이후의 기록이 없으므로 두 해를 제외하여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망은 3086명, 폐업은 749명, 취소는 105명, 기타는 2명으로 총 3943명이다. 연간 사망은 106.41명, 폐업은 25.82, 취소는 3.62명이 이루어진 셈이다.

③ 고찰

1910-1920대 면허 반납을 살펴보면, 1915년의 사망과 1916년의 폐업이 비교적 높다. 또한 면허반납 총수도 1915년과 1918년에 사이의 기간에도 높게 나타난다. 폐업의 경우 단순한 임의폐업도 있지만, 노쇠나 병으로 인하여 얼마 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면허 발급 시의 높은 연령과 연관이 있다. 신동원은 총독부관보를 통해서 1914-15년에 면허를 받은 의생의 연령을 분석하여 연령이 40대 이후인 경우가 2/3이라는 사실

을 밝혔다.<sup>15)</sup> 당시 한반도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919년 전후로 조선과 일본에 유행성 독감이 만연했다. 그러나 이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1940년대에 면허반납이 줄어드는 까닭은 이미 상당수의 영년의생이 사망하거나 폐업하였기 때문이다.

(2) 영년의생의 사망연령

① 영년의생의 사망연령 통계

통계의 표본은 총독부관보에 수록된 사망자뿐 아니라, 해방이후에 사망한 이들도 추가했다.<sup>16)</sup> 사망 월일은 모르고 연도만 아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 연령은 만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추산 방식으로 계산했다. 참고로 면허를 발급받을 때 영년의생 중 최고령자는 1832년 1월 14일 태어나 1914년 5월 11일 면허를 받은 李昌來(2450번)이고, 최연소자는 1894년 1월 3일 태어나 1914년 3월 16일 면허를 받은 鄭再道(554번)이다.<sup>17)</sup>

영년의생 중에 사망 연령이 확인된 이는 모두 3313명이다.

표 3. 영년의생의 연령대 별 사망자 수(名)

연령	사망자 수	연령	사망자 수
20-25	7	61-65	482
26-30	16	66-70	516
31-35	45	71-75	470
36-40	98	76-80	334
41-45	152	81-85	146
46-50	228	86-90	36
51-55	338	91-95	8
56-60	436	96-100	1

표 4. 영년의생의 연령대 별 사망 백분율(%)

연령	백분율	연령	백분율
20-25	0.21	61-65	14.53
26-30	0.48	66-70	15.56
31-35	1.35	71-75	14.18
36-40	2.95	76-80	10.08
41-45	4.58	81-85	4.4
46-50	6.87	86-90	1.08
51-55	10.1	91-95	0.24
56-60	13.15	96-100	0.03

15) 신동원. op. cit. p. 115. 20대 8%, 30대가 25.1%, 70대가 2% 등. 이 수치는 영년의생과 한년의생을 섞어 낸 통계이다.

16) 해방이후 한의사면허를 받은 후, 말소자는 국가기록원. 전자관보(http://www.moi.go.k)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7) 의생규칙 2조에 조선인으로서 나이 20년 이상으로 국한되므로 최연소자는 우리나라 21세가 한계이다.

② 고찰

연령대별 사망 백분율에 있어서, 70세 이상의 경우가 30%에 달하고, 60세 이상인 경우는 60%에 이른다. 처음 면허를 받은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가 2/3이었으니, 높은 영유아 사망률이 반영된 당시의 평균수명보다야 사망연령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sup>18)</sup>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생은 당시 평균수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수했다. 김정근에 따르면 당시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1905-10년 22.6세, 1910-15년 24세, 1915-20년 25.8세, 1920-25년 28.3세, 1925년-30년 32.4세, 1930-35년 36.3세, 1935-1940년 40.6세, 1940-45년 43세, 1945-50년 45.6세, 1950-55년 48.3세이다.<sup>19)</sup>

의생이 장수한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영년의생의 면허발급

(1) 영년의생 거주지별 현황

① 영년의생의 거주지별 통계

1914년 4월 1일에 총독부는 대대적으로 조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 관보에서는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4월 1일 이전 것과 이후 것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4월 이후의 행정구역을 4월 1일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수정하여 논하였다.<sup>20)</sup> 이 통계는 확인된 한년의 생 80명과 결번 2명을 제외한 5885명(5967번 이전 면허자)을 표본으로 하였다.

표 5. 거주지별 영년의생 수<sup>21)</sup>

지역	영년의생 수(名)
경기 경성부	五部 269, 8面 43
경기도	인천 17, 36郡 391
강원도	25郡 248
경상남도	동래 73, 마산 90, 27郡 604
경상북도	대구 50, 40郡 553
전라남도	목포 30, 30郡 303
전라북도	군산 31, 25郡 261
충청남도	38郡 234
충청북도	17郡 212
평안남도	진남포 40, 평양 140, 17郡 370
평안북도	의주 90, 21郡 502
함경남도	원산 32, 13郡 773
함경북도	청진 25, 10郡 306
황해도	19郡 188

표 6 거주지별 영년의생 백분율

지역	영년의생 백분율(%)
경기 경성부	五部 4.57, 8面 0.73
경기도	인천 0.28, 36郡 6.64
강원도	25郡 4.21
경상남도	동래 1.24, 마산 1.52, 27郡 10.2
경상북도	대구 0.84, 40郡 9.39
전라남도	목포 0.51, 30郡 5.14
전라북도	군산 0.52, 25郡 4.43
충청남도	38郡 3.97
충청북도	17郡 3.6
평안남도	진남포 0.07, 평양 2.38, 17郡 6.29
평안북도	의주 1.53, 21郡 8.53
함경남도	원산 0.54, 13郡 13.13
함경북도	청진 0.42, 10郡 5.2
황해도	19郡 3.19

府를 제외한 郡에서 50명 이상의 영년의생이 거주한 경우는 13곳으로 함남 북청(174명), 함남 함흥(166명), 함남 갑산(91명), 함북 경성(81명), 평북 정주(73명), 평북 용천(73명), 경남 울산(71명), 함남 홍원(71명), 평북 영변(66명), 함북 명천(59명), 경북 경주(55명), 충북 청주(53명), 경남 용남(50명)이다.

18) 20대보다 40대가 60대까지 살 기대여명이 더 높다. 다만 일제강점기 각 연령대 별 기대여명에 대한 통계를 논자가 알지 못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

19) 윤애란. 「한국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89.에서 재인용. 의생은 대다수가 남자이다.

20) 의생규칙 제 2조에 의하면 의생면허 신청은 4월 이전에 마감되었다. 행정구역은 경상남도 용남군이 통영군으로 개칭되는 등의 단순한 명칭 변화에서, 경기도 경성부의 8면이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속되는 군간 이동, 전북 구례군이 전남 구례군으로 바뀌는 등의 도간 이동까지, 1914년 4월 1일 이전대로 환원시켜 추산했다.

21) 경성부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조선시대 한성부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므로 따로 항목으로 만들었다. 5부는 사대문 안이고 8면은 사대문 밖이다. 영년의생 항목에 郡과 별개로 기록된 행정구역은 府이다. 이들 부에는 대한제국기에 개항장이나 개시장이 있었다.

② 고찰

영년의생의 거주지를 분석하면 함경남도가 매우 높다. 황상익은 1943년의 총독부 통계를 조사하여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짐을 보여주었다.<sup>22)</sup> 대조적으로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sup>23)</sup> 50명 이상의 의생이 거주하는 군의 1-3위가 모두 함경남도이며, 이들 군은 府를 포함하더라도 경성부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유독 함경남도에 한의학이 융성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sup>24)</sup> 다만 함경남도 함흥군이 일제강점기 한의계 최고 명의로 꼽히던 金弘濟(1855-1930)<sup>25)</sup>와 사상의학을 태동시킨 李濟馬(1837-1900)<sup>26)</sup>의 활동지였던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이후 함흥을 중심으로 후학을 길러냈고, 그 直傳 제자들이 또한 후학을 양성했다. 이 영향력이 20세기 초반에도 이어진다. 이로 유추해 보면 전라도에서 의생이 유독 적었던 까닭을 후학 형성에 적극적인 의학대가가 없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2) 해방이후 영년의생의 한의사 면허발급

① 한의사면허 발급현황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부칙 3조에 의거 생존한 의생을 漢醫師로 개칭하게 되었다. 관보를 통해 한의사 등록명부에서 영년의생을 조사하면 2번 金圭泰(의생면허 4511번) 이하 184명이 확인된다.<sup>27)</sup> 柳煥秀(의생면허 3188번)가 1956년 12월 4일에 면허번호 929번을 받은 이후로는 한의사 명부에서 영년의생을 찾을 수 없다.

② 고찰

金圭泰의 경우, 면허 등록일이 1948년 12월 20일이다. 그러므로 1952년 한의사 제도 이전에 과도기적인 면허 등록 제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1952년 한의사면허 명부

를 보면 1-200번 사이에 꺾번이 15명이나 된다. 이를 과도기적인 제도 하에서 면허번호를 발급받았으나 1952년 이전에 사망하여 반납한 것으로 논자는 추정해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정적 근거는 없다.

한의사가 된 영년의생에서 한의사 면허번호 200번 이내만 헤아리면 102명이 해당되는데, 이는 200번 이내 전체(꺾번 제외)에서 비율이 55.1%이다. 영년의생이 일제 강점기에 이어 해방이후 한의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2. 총독부 관보 의생 관련 용어

1) 永年醫生

(1) 면허 발급

① 발급 대상

조선총독부령 제 102호 의생규칙의 2조에 의한다. 첫째, 조선인으로서는 20년 이상인 자, 둘째, 시행 전 조선에서 2년 이상 의업을 한 자로 국한되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다. 의생규칙은 부칙 1항에 의해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14년 4월 이전에 신청이 되어야 영년의생이 되었다.

1940년대에는 의생 반납 등에 일본식 이름이 흔한데, 모두 조선인이고 창씨개명의 결과이다. 창씨개명 때에 기존의 성씨를 활용해 만든 경우, 해당 의생의 본관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新井”은 신라의 井을 말한다. 시조인 박혁거세가 우물에서 나온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에서 연유했으므로 密陽朴氏임을 알 수 있다.

② 재발급

타인명의로 부정발급 받아서 면허 무효가 된 경우가 아

22) 황상익, “일제시대 북쪽에 의사가 많았던 까닭은?”. 프레시안, 2011.6.30. 함경남도는 전체인구에서 비율은 7.9%에 불과하지만 전체의생에서 비율은 14.4%에 달한다.  
 23) 황상익은 1943년 전라남도가 전체인구에서 비율이 10.8%이지만 전체의생에서 비율은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4) 영년의생의 수가 많으면 한의학이 융성했다 볼 수 있는 까닭은 영년의생의 경우, 총원의 제한 없이 신청자에게 모두 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의생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는 전체수에 비례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지역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는 근거도 없다. 더구나 儒醫로 밝혀진 이들이 많은 함경남도와 경상북도의 영년의생 수가 많은 점도 영년의생 수 자체가 한의학의 융성과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5) 金弘濟와 그 제자들에 대한 설명은 본문 3의 3) “영년의생의 의서 저술” 항목에 상세하다.  
 26) 李濟馬의 제자들이 많았던 淸州韓氏 禮賓尹公派의 가계에 대해선 본문 3의 4) “李濟馬와 李圭畷의 제자”에 상세하다.  
 27) 한의사면허 등록, 말소자는 대한민국관보에 수록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전자관보(<http://www.moi.go.k>)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라면, 일정 기간을 거쳐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영년면허의 경우 바뀐 번호로 새롭게 영년면허가 재발급 되었다. 원래 영년면허는 5967번 이전에만 존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7134, 7141, 7159, 7186, 7211, 7273, 7281, 7309, 7316, 7341, 7393, 7404, 7511, 7888, 7893, 7964, 8210, 8313, 8314, 8318, 8324, 8615, 8639, 8650, 8757, 8816, 8830, 9064번의 경우도 영년면허가 된다. 이 사례들은 면허반납이 이루어지면서 조사되었으니, 실제 5968번 이후의 영년면허는 더 많을 것이다. 관보에서 면허무효 후 재발급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한년의생은 면허 기한 때문에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만 영년면허의 경우는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호를 지니는 사례가 많기에 단순히 면허 발급번호만 가지고 의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차가 있다.

## (2) 면허 반납

### ① 반납 사유의 종류

영년면허의 반납 사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사망, 둘째 임의폐업, 셋째 면허취소이다. 면허취소는 의생규칙 5조 1항에서 “의생이 금고이상의 형 처분을 받거나, 또는 의업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또는 신체정신에 이상이 있어 의업에 불가할 때에 면허취소 또는 의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보를 보면 구체적인 면허취소의 사유는 기록되지 않는다.

### ② 영년면허가 한년의생으로 바뀌는 사례

폐업을 하거나 면허취소당한 이후에 다시 의업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을까? 면허취소의 경우 의생규칙 5조 2항을 보면 “처분의 원인이 그치거나 하면 재교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관보를 살펴보면 재교부 시에는 영년면허가 아닌 한년면허를 새롭게 부여받아 의업을 하게 된다. 이 때 새 면허의 경우 기존번호를 쓰지 않고, 번호도 새로 부여받는다. 그러한 예가 다음의 8명이다.

姜德龍(폐업 후 발급), 高允化(취소 후 발급), 金善應(폐업 후 발급), 石宗蒜(폐업 후 발급), 林明昊(취소 후 발급), 張錫圭

(취소 후 발급), 趙炫昇(취소 후 발급), 韓用燦(폐업 후 발급)

### (3) 면허무효

#### ① 면허무효의 정의

면허무효는 어떠한 사유로 기존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가 이루어지면 기존 면허번호는 쓸 수 없다.

#### ② 면허무효의 사유

면허무효의 사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면허증 분실이나 망실, 둘째 화재로 인한 소실, 셋째 타인면허로 부정발급 받은 경우이다. 관보에서 면허무효 후의 재발급 내역이 없어도 면허는 재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발급 되는 경우 관보에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드문 일이지만 분실된 면허를 새 면허발급 이전에 찾으면 면허무효가 취소된다.

## 2) 限年醫生

### (1) 면허 발급

#### ① 발급 대상

조선총독부령 제 102호 의생규칙 부칙 2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의업을 受得한 조선인으로서 적당함을 얻은 이는 5년 이내의 기한으로서 면허를 부여하였다. 처음에는 5년 주기로 갱신되다가 점차 3년 주기로 고착화되지만, 처음부터 3년 기한으로 면허가 발급된 사례도 있어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 ② 면허의 갱신

의생규칙 부칙 2항에 의거하여 한년의생은 기한만료 전에 면허를 재교부 받아야만 의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때 허가된 기한이 지나면 기한만료로 면허반납을 해야 했다. 만약 계속 의업을 하고 싶다면 새로 면허번호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경기도 인천부의 趙宗鏞의 사례처럼 면허번호가 셋인 사례도 있다.<sup>28)</sup>

28) 그는 1915년 6월 10일 한년면허 5967번을 받았는데, 1923년 5월 31일 기한만료로 면허를 반납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20일 한년면허 7043번을 받았다가, 1935년 3월 20일 면허무효가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7월 8일 한년면허 8654번을 받았다가 1938년 7월 15일 폐업으로 면허를 반납한다.

관보에서 한년의생이 갱신을 繼續醫生免許 또는 醫生繼續免許라는 항목 안에서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냥 의생면허 항목에서 혼재되어 기록된 경우도 있다.

### ③ 면허의 기한

의생규칙 부칙은 5년 이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으로 첫 갱신은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1920년 3월 4일 이후의 갱신에는 그 주기가 3년으로 줄어든다.<sup>29)</sup> 1920년 이후 신규면허자도 그 기한은 5년이 아닌 3년이다. 이 주기는 1946년까지 이어진다.

### ④ 면허 지역

한년면허 초기 발급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지역이 없었다. 그러다 1921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 154호에 의해 의생규칙 개업지역을 정하게 되어, 1922년 이후로는 限地醫生의 성격이 추가된다.<sup>30)</sup>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최초의 한년면허자인 禹夏燾(2416번)이다. 한지면허가 되면서 무의촌 지역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해 의생면허가 허가되었다. 이 제도는 전체 의생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 (2) 면허 반납

### ① 반납 사유의 종류

한년의생의 반납 사유는 영년의생과 같은데 추가로 허가된 기한 내에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만료가 되어 면허를 반납하게 된다.

### ② 면허 지역의 변경

1922년 이후의 한년의생은 한지의생이기도 하므로, 허가

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반납하고,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다. 단순히 도내에서 면허 지역만 변경할 경우 새 번호를 받지 않고 기존 번호 그대로 하였다. 다만 면허 기한은 갱신 이후부터 시작되어 다시 추산되었다.

## 3. 영년의생의 출신과 의서 저술

### 1) 조사목적

조선시대의 의학 종사자는 儒醫, 醫員, 藥商의 세 부류가 존재했다. 김남일은 유의를 “한의학에 연구하는 계층 가운데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면서 학문 발전을 선도했다”<sup>31)</sup>고 평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통 의료인의 지위가 의사에서 의생으로 격하됨에 따라 의생에 등록된 사람 중에 유의는 없고, 거의가 醫員이거나 藥商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멸시를 참지 못하고, 의학계를 떠나버린 유의들이 많다는 말이다.<sup>32)</sup>

본 항목에서 영년의생의 이력과 의서 저술을 조사하여 그 통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활동 또한 학술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영년의생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드러난 바 있다.<sup>33)</sup> 본고에서 교육관련 활동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김성수 등에 의한 선행연구는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의료 상황이 바뀌었음을 지적했다.<sup>34)</sup> 김성수는 17세기 중반 이후 사설 의원과 약국이 확대되면서 유의에서 상업의로 의료계의 중심이 이동했고, 18세기 이후로는 전문의와 전문의서가 편찬되면서 유의의 영역은 더욱 축소되었음을 논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유의의 역할은 왕실진료의 한 축인 議藥同參<sup>35)</sup>과 의서의 편찬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초 한의학에서 유의는 議藥同參이 포함된 태의원 전의의 행적과 학술 활동이 드러나는 의서 저자를 조사하여 살필 수 있다. 대한제국기 전의는 기존 내의원의 三廳에 속한 의관들 뿐 아니라 유의라 할 수 있는 議藥同參까지 구분 없이 임명되었다. 만약 전의들이 영년의생으로 이어졌고, 대한제국기와 일제 강점기에

29) 신동원. op. cit. p. 114.에서는 1923년이라 하였으나, 실제 관보를 보면 1922년 1월부터 한지면허가 부여됨이 확인된다.

30) 신동원. op. cit. p. 114.

31)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파주:들녘. 2011:10.

32)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op. cit. p. 474.

33) 예를 들어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57-87.

34) 김성수. 「조선시대 유의의 형성과 변화」. 한국사학회지. 2015;28(2):118-119.에서 신동원, 김성수, 김호 등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35) 왕실의료는 17세기 중반 이후 醫科를 거친 內醫, 침술치료에 특화된 內鍼醫, 외방에서 초빙된 醫藥同參醫가 담당했고, 이를 內醫院 三廳이라 불렀다. 여기서 醫藥同參과 議藥同參은 구분이 필요한데, 전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외방에서 의약에 능한자를 불러 醫官으로 임명하여 내의원 의약동참청 안에 두는 의관직이고, 후자는 신분직역이 幼學 이상인 자 중에 의약에 능한 자를 불러서 임시로 왕실진료에 참여하게 한 이들이다.



간행된 의서의 저자들이 영년의생으로 밝혀진다면, 유의의 부류 또한 영년의생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유의의 부류는 원래 소수일 수밖에 없으며, 업의와 다르게 의술을 생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아니기에, 업의와 약종상에 비해 그 수가 당연히 적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2) 典醫 이력의 영년의생

### (1) 전의출신 현황

대한제국 전의 출신의 영년의생은 모두 25명으로 먼허 번호순으로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李王家에서만 활동한 이들은 제외했다.<sup>36)</sup>

崔錫胤(38번), 李洵宰(62번), 洪在皞(71번), 皮相德(72번), 李海盛(77번), 崔奎憲(97번), 金鍾九(101번), 李鶴浩(113번), 李峻奎(115번), 李圭瑛(129번), 崔邦麟(166번), 李海昌(178번), 高一鉉(181번), 裴碩鍾(192번), 金昌有(427번), 張容駿(876번), 盧駒榮(1471번), 李命倫(1476번), 沈永錫(1818번), 方啓榮(3652번), 魯炳憲(3752번), 朴準承(3961번), 金東錫(3962번), 徐丙孝(4580번), 洪哲善(5317번)

### (2) 고찰

전의를 대한제국 시절 태의원에 근무했던 조선 최상위 의원집단이다. 이들 중 1914년 이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27명인데, 서양의사로 활동한 내침의 李濟奎와 郡守를 지낸 바 있는 내의 玄燦鳳을 제외한 25명이 영년의생 명부에서 확인된다. 즉 대한제국 전의는 의생규칙이 공포되자 의생명부에 취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영년의생의 의서 저술

### (1)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의서 현황

이 시기 간행된 의서 중에 이전에 나온 의서를 복간하여

출간하거나 정리한 결과물은 제외하고, 19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저술된 의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생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 또한 제외하였다. 『普濟演說』(저자 미상, 1900)을 비롯한 상당량의 필사본 의서도 전하지만, 간행본에 비해 확산의 측면에서 당시 의학계에 영향력이 미비하므로 조사하지 않았다.

초간의 간행연도 순으로 하면 42종으로 다음과 같다.<sup>37)</sup> 밑줄은 영년의생의 저작이다.

『素問購讀俗解(李圭駿, 미상)』, 『東醫壽世保元(李濟馬, 1901)』, 『黃帝內經 素問大要(李圭駿, 1906)』, 『小兒醫方(崔奎憲, 1912)』, 『袖珍經驗神方(李麟宰, 1913)』, 『醫方神鑑(韓秉璉<sup>38)</sup>, 1915)』, 『醫方撮要(李峻奎, 1917)』, 『麻疹經驗方(李常和, 1918)』, 『經絡學總論(洪鍾哲, 1922)』, 『醫監重磨(李圭駿, 1922)』, 『女科大要(李載乾, 1926)』, 『增補辨證 方藥合編(李常和, 1927)』, 『紅疹神方(鄭淳中, 1927)』, 『春鑑錄(李永春, 1927)』, 『運氣學講義錄(金海秀, 1928)』, 『醫家秘訣(金于善, 1928)』, 『醫方大要(金海秀, 1928)』, 『一金方(金弘濟, 1928)』, 『韓方醫學小兒全科(閔泰潤, 1928)』, 『東醫四象新編(元持常, 1929)』, 『壽世秘訣(李昌雨, 1929)』, 『袖珍自解 醫經精義(崔晃, 1929)』,<sup>39)</sup> 『大東醫監(金海秀, 1931)』, 『萬病萬藥(金海秀, 1930)』, 『兩無神編(南載喆, 1931)』, 『麻疹濟生方(朴道億, 1933)』, 『秘傳神方(權大燮<sup>40)</sup>, 1933)』, 『醫學通俗法要義(田光玉, 1933)』, 『濟世寶監(文基洪, 1933)』, 『靑囊訣(南采祐, 1933)』, 『經驗古方要抄(徐丙孝, 1936)』, 『民間醫術 理療法(趙憲泳, 1935)』, 『金匱秘方(李敏鳳, 1936)』, 『治疹指南(韓敬澤, 1936)』, 『肺病漢方治療法(趙憲泳, 1941)』, 『古今實驗方(安昶中, 1937)』, 『五運六氣醫學寶監(趙元熙, 1938)』, 『神經衰弱症治療法(趙憲泳, 1938)』, 『胃腸病治療法(趙憲泳, 1939)』, 『婦人病治療法(趙憲泳, 1941)』, 『漢方醫學指南(李常和, 1942)』, 『傷寒經驗方要撮(曹澤乘, 曹秉侯, 1943)』

### (2) 고찰

#### ① 金弘濟와 그 제자

36) 예를 들어 金永勳(170번)은 대한제국 시절 典醫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7) 김남일. op. cit. p. 24-490.과 논자의 소장본으로 조사했다.

38) 本貫 淸州. 禮賓尹公派 27世.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육교 정묘 청주한씨대동족보』, 대전:희상사, 1993:44권 4719. 1859.4.27.-1946.12.1. 대한제국기에 철도원주사를 지냄. 1914년 1월 24일 영년 의생명부 20번을 받음. 전선의회, 동서연구회 등에서 활동

39) 靈素學會에서 간행되었는데 대표저자로 된 최황은 영년의생이 아니나, 영소학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회장 安孝式(2446번)을 비롯해서 거의가 영년의생이다.

40) 저자는 의생명부에 보이지 않는데, 간행소가 대구 大昌藥房이라 저자는 의료종사자로 보인다.

『一金方』를 쓴 金弘濟이 永年醫生임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一金方』에는 별도의 서문이 존재하지 않아, 판권지의 주소 외에는 저자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咸南 咸興郡 下岐川面 上中里”<sup>41)</sup>라는 주소를 통해, 金弘濟가 1855년 7월 1일 출생, 1914년 9월 6일 의생면허 5369번을 발급 받아 1930년 4월 9일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총독부 관보의 의생면허 등록자에 咸南 咸興郡 下岐川面가 거주지인 金弘濟가 나온다. 의서는 아니지만, 1921년에 광동서국에서 간행된 『新訂 醫書玉篇』도 그의 저술이다. 1930년에 간행된 金海秀의 『萬病萬藥』을 보면 조선의 名醫를 꼽으면서 당대 인물로 洪鍾哲, 崔奎憲, 朴準承과 함께 金弘濟를 거론하는데,<sup>43)</sup> 이 네 醫家は 모두 영년의생이기도 하다. 金弘濟를 제외하면 다른 셋은 서울에서 활동한 의가이다. 『增補咸山誌』에 기록된 金弘濟의 제자들<sup>44)</sup> 중에 영년의생은 5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함경남도 함흥에 거주하는 이들로 의생면허 5360번인 李君玉(1874.1.24-?), 4890번인 文會運(1859.11.26-1926.2.15), 5447번인 崔浩璿(1890.9.13-?), 5449번인 崔浩廷(1890.2.14-?), 5359번인 金衡善(1874.2.3-?)이다.

## ② 간행의서의 저자 분류

이들 42종의 간행의서를 분류해보면, 의생제도 성립 이전에 사망한 저자의 저술은 李永春의 『春鑑錄』,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 李昌雨의 『壽世秘訣』의 3종, 18종이 영년의생

의 저작, 한년의생에 저술된 경우는 『濟世寶監』의 한 종이다.

나머지 20종 가운데 의생이 아닌 유의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것은 李圭峻 저작 3종, 李載乾<sup>45)</sup>의 『女科大要』, 曹澤乘<sup>46)</sup>의 『傷寒經驗方要撮』, 金于善의 『醫家秘訣』, 南載喆의 『兩無神編』,<sup>47)</sup> 元持常<sup>48)</sup>의 『東醫四象新編』, 李敏鳳의 『金匱秘方』, 韓敬澤<sup>49)</sup>의 『治疹指南』, 鄭淳中<sup>50)</sup>의 『紅疹神方』, 閔泰潤의 『韓方醫學小兒全科』<sup>51)</sup>의 13종이다. 이처럼 의생면허를 받지 않은 유의의 저작도 상당수 확인된다.

## 4) 儒醫 李濟馬와 李圭峻의 제자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의학 학과를 형성시킨 李濟馬와 李圭峻은 본인들이 유의였으며, 그 제자들이 일제강점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 중 영년의생을 중심으로 논한다.

### (1) 李濟馬의 후학 淸州韓氏 禮賓尹公派

논자는 李濟馬의 제자 중에 유독 韓氏들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함남 함흥 일대에 살았던 한씨 사족을 조사했다. 청주한씨 예빈윤공파 또는 관북파, 안변한씨로도 불리는 이들이 함흥, 정평, 고원군 등에 세를 떨치며 살았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이제마의 매제 韓象鉉(29世. 소파司正公派)도 있다. 이 韓象鉉이 李濟馬와 한씨 제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

41) 김홍제. 『일금방』. 경성:趙鼎久方. 1928:판권지. 참조

42) 1915년 1월 29일자, 1930년 6월 10일자 총독부관보 참조.

43) 김남일. op. cit. p. 344.에서 재인용. 안상우는 “고의서 산책 200 - 일금방” 민족의학신문. 2004.4.30.에서 1974년 증보간행된 『增補咸山誌』을 인용하여 김홍제가 “세상에서 北關大醫라고 通稱하는 최고의 名醫다” 하였다.

44) 안상우. 앞의 글에서 재인용

45) 선행연구인 김윤상. 「여과대요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2):185.를 보면 李載乾은 全州李氏 新城君派로 19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여과대요』의 서문이 1922년 3월로 되어있어,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재건. 『여과대요』. 경성부:京城府笠町42番地. 1922:서문. 참조.

46) 오준호. 「해남의 유의 조택승 조병후 부자 연구」. 호남문화연구. 2012;52:137-163.에 따르면 曹澤乘은 전남 해남 지방의 유의로 昌寧曹氏 正言公派의 후손들이다.

47) 판권지에 나온 주소로서 저자가 儒醫임을 알 수 있다. 동일 주소지의 남재철이 『조선신사대동보』에 本貫 英陽으로 牧使 南齋齋 후손으로 1880년 12월 20일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재철. 『양무신편』. 울진:춘화당인쇄소. 1931:판권지. 참조. 『조선신사대동보』는 국가편찬위원회의 한국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검색

48) 선행연구로 윤보현, 방성식. 「동의사상신편의 저자인 원지상의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0;12(2):8-16.가 있다. 원지상은 華西學派를 계승한 儒醫임을 밝혔다.

49) 『治疹指南』의 서문을 학부대신 李載崑과 朴泳孝가 쓰고 있어, 저자 또한 경성부에서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경택. 李載崑의 서문에 1934년 저자가 80세라고 하였으니 1855년 생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조사하면 韓敬澤은 本貫이 淸州, 文靖公派 30世 1885년 생원시에 급제, 대한제국 기에 主事를 지낸 이다. 한경택. 『치진지남』. 경성부:韓敬澤家. 1936:서문. 참조. 『대한제국관원이력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검색. 족보는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6권 4271.

50) 발행처가 경남 함양군 유림면의 梅軒書室인데 서문을 보면 梅軒은 鄭淳中의 號임을 알 수 있다. 서문내용과 발행처 등을 사료하면 業醫가 아닌 儒醫로 볼 수 있다. 정순중. 『홍진신방』. 함양:매현서실. 1927:서문, 판권지. 참조

51) 판권지를 보면 저자의 주소가 충남 홍성군 장곡면으로 되어있다. 『한방의학소아전과』. 경성:금벽사. 1928:판권지 참조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검색하면 1907년 5월 12일 결성군 主事에 임명되었다가 1909년 2월 18일 의원면직된 민태윤이 나온다. 충남 결성군은 일제시대 때 충남 홍성군에 통합되어 사라진 군이다.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① 韓穆淵 (1860.6.1-?)

李濟馬의 제자들은 栗洞契를 조직하여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목활자로 『東醫壽世保元』 초간본을 간행한다. 이 때 초간본 간행에 참여한 7명 중에 영년의생은 韓穆淵 뿐이다. 韓穆淵은 淸州韓氏 禮賓尹公派 30世로서, 숙부 韓象鉉이 李濟馬의 매제이다.<sup>52)</sup>

韓穆淵은 蔭職으로 純陵參奉<sup>53)</sup>과 定陵奉事<sup>54)</sup>를 지내고 陸六한 인물인데,<sup>55)</sup> 1914년 7월 13일 의생면허 4594번 (영년면허)을 받은 유의이다. 그는 1928년에 동서의학연구회의 함경남도 지부장을 역임했다.

② 韓稷淵 (1863.4.1-1926.11.21)

韓龜鉉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차남이 韓稷淵이고 장남이 韓穆淵이다.<sup>56)</sup>

韓稷淵은 『承政院日記』<sup>57)</sup>와 『司馬榜目』<sup>58)</sup> 등의 문헌을 통하여, 그가 1894년 식년시 진사가 되어, 함경남도 分 榜 상시주사,<sup>59)</sup> 삼수군수<sup>60)</sup>를 지낸 행적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1914년 3월 14일 영년면허인 의생면허 490번을 받는다. 관직을 거친 영년의생은 많지만, 대부분 醫官의 이력과 관련된 경우이다. 그런데 韓稷淵은 본인이 進士로서 陸六하여 군수에 올랐을 뿐 아니라, 가문 또한 유력하였다. 그는 이력만 보면 일제강점기를 대표할 수 있는 儒醫의 사례이다. 韓稷淵의 경우, 아버지 韓龜鉉은 1852년 식년시 진사, 조부 韓用近은 1848년 증광시 진사, 증조부 韓弘毗은 1805년 증광시 생원, 고조부 韓栢林은 1777년 식년시 생원, 5대조 韓宗濟는 1733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즉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함흥에서 매우 알려진 가문이었다.

③ 韓教淵(1868-?)

韓穆淵의 三從弟<sup>61)</sup>인 韓教淵은 1914년 보급서관에서 『東醫壽世保元』 4권이 간행될 때에 서문을 쓴 다. 李濟馬의 제자이나 의생은 아니다.

④ 韓弼淵(1876.10.28-1938.5.22)

韓穆淵의 三從弟인<sup>62)</sup> 韓弼淵은 함흥이 아닌 평안남도 진남포부에 거주하면서 1914년 3월 14일 영년의생면허 492번을 받았다. 韓教淵의 동생이다. 李濟馬 제자로 추정된다.

⑤ 韓秉武(1893-?)

韓穆淵은 두 아들을 두었다.<sup>63)</sup> 차남이 한설야란 필명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韓秉道(1900-1976)이다. 장남 韓秉武는 의생은 아니지만, 『東醫壽世保元』 중간 작업에 관여하였다. 그는 보원계의 일원이 되어 1935년 중국 북경에서 석인본으로 6판을 주도적으로 간행하였고, 1941년 함흥에서 7판 간행에도 관여한다.

⑥ 韓昌淵(1878-?)

韓穆淵의 從弟로 李濟馬의 제자이다. 아버지 韓象鉉이 李濟馬의 손아래 누이(1846년 생)와 결혼했기에 韓昌淵은 李濟馬의 외조카가 된다.<sup>64)</sup> 韓穆淵과 함께 『東醫壽世保元』 초간본 간행에 참여한 栗洞契 7명 중 한 사람이다. 『承政院日記』를 통해 義陵參奉<sup>65)</sup>을 지낸 전력을 알 수 있다.<sup>66)</sup>

52)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3605.

53) 『承政院日記』 1895년 4월 29일 기사

54) 『承政院日記』 1895년 12월 8일 기사

55)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

56)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권 3605.

57) 본고에서 승정원일기 원문검색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를 검색하였다.

58) 본고에서 사마방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검색

59) 『承政院日記』 1900년 10월 17일 기사

60) 『承政院日記』 1908년 12월 6일 기사

61)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권 3607.

62)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권 3607.

63)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권 3606.

64)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권 3605.

65) 1902년 9월 9일 기사

66)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

⑦ 韓斗正(1880.11.18-?)<sup>67)</sup>

淸州韓氏 禮賓尹公派 28世로 함경남도 정평군 태생이며, 李濟馬의 제자이다. 韓稷淵 등은 소과 중에 司正公派에 속하고, 韓斗正은 副正公波에 속하여 같은 집안은 아니다.<sup>68)</sup> 1940년 『格致稿』, 『明善錄』을 간행하였고, 1941년 『東醫壽世保元』 7권 간행을 주도했다.

(2) 李濟馬의 아들 李龍水

李濟馬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次男이 李龍水이다. 李龍水는 관보에 따르면, 1872년 3월 2일 태어나 1937년 1월 26일 사망했다. 그는 거주지가 함흥군 주남면 중리로, 1914년 8월 7일 영년면허인 의생면허 4854번을 발급받았다. 李濟馬의 둘째 아들이 永年醫生이었음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집안 내력으로 볼 때 그도 유의의 범주에 들어간다.

(3) 李奎峻의 후학

李奎峻의 후학에 대해서는 오재근의 선행연구가 있다.<sup>69)</sup> 이를 참조하면 李奎峻의 제자 중 영년의생으로 알려진 이는 3명에 불과한데, 모두 경상북도에 거주하였다. 면허번호 1998번 경상북도 장기군의 徐奉源(1880.8.20-1933.6.28), 경상북도 경주군의 4022번 金容錫(1887.4.23-?), 4038번 경상북도 영덕군의 李汶根(1879.2.28-1930.3.6)이다.

(4) 고찰

영년의생이 된 李濟馬와 李奎峻 제자 분석을 통해, 문인 수에 비해 의생이 된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둘의 문인이라 해서 모두가 의학을 배웠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학풍 상 그들은 유의의 전통에 속한다.

앞서 의서 저술의 경우까지 검토하면, 유의가 의생면허를 받지 않은 사례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의생 면허를 받지 않았다 해서, 유의들이 의서 저술을 포함한 학술 활동을 그만두지는 않음은 분명하다. 유의들은 원래 직업적인 의료인이 아니기에 의생 면허 취득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 유의가 의생제도 때문에 그 역할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 성리학이 쇠퇴하고, 서구 의학이 중심에 놓임에 따라, 한의학과 함께 그 영역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李濟馬, 金弘濟, 李奎峻 등의 문인은 스승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거주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의학대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앞서 의생의 거주지 통계 분석에서 논한 바 있다.

### III. 결론

1914년에 생겨난 영년의생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 한의계 구성원이다. 본고에서 논자는 관보에서 영년의생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고, 영년의생의 출신과 의서 저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논자는 관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영년면허와 한년면허가 혼재되어 발급되었다. 즉 면허기한이 기록되지 않은 5967번 이전에도 한년의생이 존재한다. 둘째, 영년의생은 당대 평균에 비해 장수했다. 연령대별 사망 백분율에 있어서, 70세 이상의 경우가 30%에 달하고, 60세 이상인 경우는 60%에 이른다. 셋째, 영년의생의 거주지를 분석하면 함경남도가 전체 영년의생 수의 13.67%로 매우 높다. 이는 李濟馬와 金弘濟가 19세기 후반 이후 함흥을 중심으로 활동한 까닭으로 보인다. 넷째, 해방이후 영년의생은 한의사 제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의사 면허번호 200번 이내만 헤아리면 102명이 해당되는데, 이는 200번 이내(궐번 제외)에서 비율이 55.1%이다.

또한 논자는 영년의생의 출신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제국 전의 27명 중에 25명이 영년의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간행된 의서 41종 중 영년의생의 저작은 18종이고, 영년의생이 아닌 유의의 저술은 13종이다. 끝으로 유의 李濟馬와 李奎峻 제자 중의 영년의생을 살펴, 특히 韓稷淵을 비롯한 淸州韓氏 禮賓尹公派의 인물들이 유의임을 알았다. 李濟馬의 차남인 李龍水가 영년의생임을 밝힌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

67) 생년월일은 『조선신사보감』에 전한다. 『조선신사보감』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http://db.history.go.kr>)

68)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op. cit. p. 44-4371.

69)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유과의 탄생과 전승」. 『醫史學』. 2014;23(1):66.

유의학의 영역은 17세기 이후 감소되어왔고, 일제 강점기 의생 제도로 인하여 특별하게 그 영역과 지위가 축소되진 않았다. 다만 이 시기 한의학과 성리학의 지위 하락과 함께 그들 또한 도태되었다.

## 참고문헌

1. 김성수. 「조선시대 유의학의 형성과 변화」. 한국사학회지. 2015;28(2):118-119.
2. 김윤상. 「여과대요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2):185.
3. 박지현. 「유교지식인 해악 김광진의 의생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보. 2016;229:157-185.
4.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12(2):110-128.
5.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 한의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002;30:333-370.
6.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유파의 탄생과 전승」. 醫史學. 2014;23(1): 66.
7. 오준호. 「해남의 유의 조택승 조병후 부자 연구」. 호남문화연구. 2012;52:137-163.
8. 윤보현, 방성식. 「동의사상신편의 저자인 원지상의 연구」. 사상체질학회지. 2000;12(2):8-16.
9. 윤애란. 「한국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89.
10. 권대섭. 『비전신방』. 대구:대창약방. 1933:판권지.
1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472-474.
1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 24-490.
13.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파주:들녘. 2011:10.
14. 김홍제. 『일금방』. 경성:趙鼎久方. 1928:판권지.
15. 남재철. 『양무신편』. 울진:춘화당인쇄소. 1931:판권지.
16. 민태운. 『한방의학소아전과』. 경성:금벽사. 1928:판권지.
17.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한국학술정보. 2012:1-578.
18. 이재건. 『여과대요』. 경성:京城府笠町42番地. 1922:서문.
19. 정순중. 『홍진신방』. 함양:매헌서실. 1927:서문, 판권지.
20. 정원희. 『소헌 정원희유고집』. 서울:현범사. 1988:25-26.
21. 정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육교 정묘 청주한씨대동족보』. 대전:희상사. 1993:6권 4271, 44권 3605, 3606, 3607, 4719.
22. 한경택. 『치진지남』. 경성:韓敬澤家. 1936:서문.
23. 안상우. “고의서 산책 200 - 일금방”. 민족의학신문. 2004.4.30.
24. 황상익. “일제시대 북쪽에 의사가 많았던 까닭은?”. 프레시안. 2011.6.30
25. 국가기록원. 전자관보(<http://www.moi.go.k>)
2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29. 대한민국정부.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